

울산광역시 중구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494
----------	------

제출연월일 2025. 11. 7.
제출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제정이유

인공지능(AI) 기술을 행정 업무에 도입하여 공무원의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여 구민에게 보다 향상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안 제1조~제3조)
- 나. 기본원칙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제5조)
- 다. 기본계획 수립(안 제6조)
- 라. 인공지능기술의 도입 및 사무의 위탁(안 제7조~제8조)
- 마. 구민 참여 활성화 지원(안 제9조)
- 바. 직원 교육훈련 실시(안 제10조)
- 사. 평가 및 환류(안 제11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근거법규: 따로 붙임

- 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1조~제3조, 제6조
- 나.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7조
- 다. 「전자정부법」 제3조, 제16조, 제21조

5. 참고사항

- 가. 예산조치사항: 해당사항 없음
- 나. 규제사무심의: 해당사항 없음
- 다.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가족복지과-37950호, 2025. 9. 17.)
 - (개선의견) 제10조(교육훈련)에 알고리즘의 성별 편향·정보격차 예방 교육을 포함하여, AI 행정 전 과정의 차별 위험을 사전 차단하고 성 평등·포용성을 강화하도록 개선할 것을 제안
 - (반영내용) 제10조제2항 교육훈련 내용 제4호에 개선의견 반영
 - 4. 개인정보 보호 및 인공지능 윤리, 알고리즘의 성별 편향 및 정보격차 예방에 관한 교육
- 라. 입법예고: 2025. 9. 8. ~ 9. 29.(21일간) / 의견없음
-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울산광역시 중구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의 행정에 인공지능기술을 도입·활용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증대하고 구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3. “인공지능 기반 행정”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및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기본원칙)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1. 투명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구현
2. 지속적인 기술 발전을 반영한 혁신적 행정서비스 제공
3. 구민 편의 증진 및 행정 효율성 향상
4. 개인정보 보호 및 윤리적 기준 준수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기반 행정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 및 기술을 발굴하고 도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을 위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기반 행정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전략
2.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재원의 확보
3. 인공지능의 공정성·투명성·책임성·안전성 및 윤리성 확보 등 신뢰 기반 조성
4.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에 따른 교육·노동·경제·문화 등 사회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
5.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따른 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대책
6. 그 밖에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필요한 사항

제7조(인공지능기술의 도입)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술을 보유한 민간기업, 전문기관, 국내외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거나 관련 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디지털 행정 역량 향상을 위하여 인공지능 등 신기술 사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

간기업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구민 참여 활성화 지원)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에 대한 구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토론, 건의, 정책 제안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통해 제안된 사항을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 개선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제10조(교육훈련) ① 구청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반 행정 구현과 관련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1.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행정환경의 변화
2.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따른 공무원의 역할 변화
3.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의 제공 및 운영 방안
4. 개인정보 보호 및 인공지능 윤리, 알고리즘의 성별 편향 및 정보격차 예방에 관한 교육

제11조(평가 및 환류) 구청장은 매년 추진한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과 관련된 사업 및 서비스에 대하여 그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을 위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근거법규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시스템”이란 다양한 수준의 자율성과 적응성을 가지고 주어진 목표를 위하여 실제 및 가상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추천, 결정 등의 결과물을 추론하는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을 말한다.
3.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4. ~ 11. (생략)

제3조(기본원칙 및 국가 등의 책무) ① 인공지능기술과 인공지능산업은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② 영향받는 자는 인공지능의 최종결과 도출에 활용된 주요 기준 및 원리 등에 대하여 기술적·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명확하고 의미 있는 설명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사업자의 창의정신을 존중하고, 안전한 인공지능 이용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사회·경제·문화와 국민의 일상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의 변화에 대응하여 모든 국민이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변경 및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등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과 전략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인공지능 개발·활용 촉진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윤리의 확산 등 건전한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위한 법·제도 및 문화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보와 투자의 방향 등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의 공정성·투명성·책임성·안전성 확보 등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기술의 발전 방향 및 그에 따른 교육·노동·경제·문화 등 사회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제협력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기본계획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부문별 추진계획으로 본다.
-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⑦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능정보화 기본법」

- 제1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국가기관등은 공공지능정보화 및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자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국가기관등은 공공지능정보화 및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전자정부법」

제3조(행정기관등 및 공무원 등의 책무)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 구현을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야 하며, 정보통신망의 연계 및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소속 직원은 담당업무의 전자적 처리에 필요한 정보기술 활용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담당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때 해당기관의 편익보다 국민의 편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6조(전자정부서비스 이용촉진을 위한 행정기관등의 책무)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국민의 복지향상 및 편익증진, 국민생활의 안전보장, 창업 및 공장설립 등 기업활동의 촉진 등을 위한 전자정부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가 손쉽게 전자정부서비스에 접근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공되는 전자정부서비스는 최신의 것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를 개발·제공할 때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의 요구사항 및 편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1조(전자정부서비스의 민간 참여 및 활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업무협약, 서비스 구매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개인 및 기업, 단체 등(이하 “민간등”이라 한다)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1. 민간등의 서비스와 결합하여 전자정부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방법
2. 민간등의 서비스를 그대로 전자정부서비스로 제공하는 방법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민간등이 전자정부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일부 기술이나 공공성이 큰 행정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

보는 제외한다)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비스의 활용 방법, 지원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4호
- 조례 등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미첨부 사유

- 「울산광역시 중구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 제정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내용으로 기술되어 있고 인공지능기술의 도입 대상 및 범위 등을 추정하기 어려워 별도의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3. 작성자

- 소 속: 홍보실
- 직 급: 지방전산주사
- 성 명: 장 희 윤
- 연락처: (052)290-3101